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주의 요구

제 목 2015년 세계청년축제 계약 체결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훈계대상자 광주광역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(○○○○○) ○○○
(전 ○○○○○○○과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(○○○○○) ○○○는 2014. 10. 31.부터 2016. 12. 31.까지
‘2015년 ○○○○축제’ 사업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광주광역시 ○○○○과(前 ○○○○○○○과)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끼와
열정을 통해 ‘청년도시 광주’의 역동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브랜드 창출위해
‘2015년 ○○○○축제’를 개최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같은 법
시행령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별지 제9호 서식(용역표준계
약서)에 의하면 용역 입찰유의서, 용역계약 일반조건, 용역계약 특수조건, 과업내
용서,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그리고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)제14
장 제2절 1.(계약문서) 가.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, 유의서, 용역계
약 일반조건, 용역계약 특수조건,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

완의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.

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,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) 제14장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⁴²⁾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아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법령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나, 2015. 5. 29.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협상문과 제안요청서만으로 ○○과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2015. 6. 3.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과 315,000천원에 계약을 체결⁴³⁾하였다.

그리고 아래 [표1]과 같이 업무분담을 통하여 위 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대행업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명확히 하였다.

42)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, 용역공정계획의 변경,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

43) - 계약기간 : 2015.6.3. ~ 2015.8.12.

- 행사기간 : 2015.0.0. ~ 2015.0.00.(9일간)

[표 1] 2015년 세계청년축제 실행계획 / 2015.6.26.)

<단위 : 천원>

구 분	업무분담 내역	사업비	비 고
합 계		887,000	
광주광역시 (○○○○○○과)	- 예산 및 행사운영 지원, 기본계획 수립 - 수탁사업자 지휘 및 일부예산 집행 ※ 홍보비, 임차료, 기획공연, 시상금,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등	572,000	
대행업체 (○○○○○○○○○)	- 축제운영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- 감독 선임,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운영 - 무대, 음향, 장비, 의자, 탁자 등 시설·시스템 임차 및 운영 - 각종 프로그램 출연자 섭외 - 현장 운영,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 등	315,000	계약금액

※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이후 위 관서에서는 당초 ○○○사와 예능프로그램 ‘○○○’ 유치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녹화스케줄 등의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관련예산 1억원을 축제예산으로 포함시켜 사용하기로 하고 아래 [표2]와 같이 약 10억원 규모의 ‘예산집행계획’을 수립(’15. 7. 9.)하였다.

[표 2] 2015년 ○○○○축제 예산집행계획

<단위 : 천원>

구 분	업무분담 내역	사업비	비 고
합 계		987,000	
광주광역시 (○○○○○○과)	- 예산 및 행사운영 지원, 기본계획 수립 - 수탁사업자 지휘 및 일부예산 집행 ※ 홍보비, 임차료, 기획공연, 시상금,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등	672,000	
대행업체 (○○○○○○○○○)	- 축제운영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- 감독 선임,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운영 - 무대, 음향, 장비, 의자, 탁자 등 시설·시스템 임차 및 운영 - 각종 프로그램 출연자 섭외 - 현장 운영, 현장 안전 및 질서유지 등	315,000	계약금액

※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그리고 [표3]과 같이 대행업체가 계약금액 315,000천원 보다 추가로 예산을

집행 할 경우 위 관서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대행업체에서 계약금액 조정 요구가 있을 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.

[표 3] 2015년 ○○○○축제 변경계약 산출내역

<단위 : 천원>

변경사유	산출내역	금 액	집행 계획	실 집 행	비 고 (계약일)
합계		145,741			
연예인 등 선금 지급 요구에 따 른 프로그램 운 영자 변경	- 가수 ○○ 공연비 : 99,000천원 - 가수 ○○ 경호팀 및 음향오 퍼 : 3,500천원 - 밴드 ○○○○ : 10,000천원 - 밴드 ○○○○ : 5,000천원	117,500	직접 집행	대행사 집 행	- 계약일 : '15.7.3. - 계약일 : 확인불가 - 계약일 : '15.7.5. - 계약일 : 확인불가
행사보험 가입 자 변경에 따른 보험비 추가	행사보험가입비 : 4,761천원	4,761	직접 집행	대행사 집 행	계약일 : '15.7.3.
안전강화에 따 른 펜스 등의 시설 증가	- 무대안전 펜스 40개*20천원*1일=800천원 - 캠핑안전 펜스 40개*20천원*2일=1,600천원	2,400	대행사 집 행	대행사 집 행	
프로그램 증가 에 따른 사무국 인력 증가	- 프로그램 담당자 추가 1,500천원*2개월*3명=9,000천원 - 프로그램 보조담당자 추가 1,300천원*2개월*4명=10,400천원 - 상주스텝 식비 추가 6천원*7명*40일=1,680천원	21,080	대행사 집 행	대행사 집 행	

※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변경계약 체결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해야 할 기획공연비와 행사보험가입비 122,261천원을 대행업체를 통해 집행하였고, 계약업체의 산출내역서 및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물량증가라는 이유로 '안전펜스 추가 설치 및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인건비' 명목으로 23,380천원을 추가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.

부연하자면 사업종료 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

나 위 관서에서는 2015. 7. 12. 사업이 완료되어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까지 끝난 이후인 2015. 8. 11.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.

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최초계약 및 변경계약 시에도 예산집행 산출내역서 없이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, 또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부분을 변경계약 체결 전에 대행업체에게 추진하도록 하는 등 계약절차 및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